

- 2024년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하반기)

온라인마케팅 홍보를 추진하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온라인마케팅 홍보 비용을 지원하여 홍보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 정착을 위해 『2024년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하반기)』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 (사 업 명) 2024년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
- (신청기간) 2024. 10. 30.(수) ~ 11. 06.(수)
- (신청대상) 도내 소상공인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규모) 충청도내 소상공인 14개소
- (지원내용)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등 온라인 활용 광고
비용 1인 1개소 최대 30만원 지원
- (추진절차)



2 지원내용

- (지원범위) 온라인마케팅 소요 비용 1인 1개소 최대 30만원 지원
 ※ 매출 관련 수수료(판매수수료, 배달비 등) 및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지원방법) 대표자 개인 또는 법인명의 계좌 입금
- (지원분야)

구분	내용
키워드광고	▶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특정 키워드 검색 시 광고
배너광고	▶ 각종 웹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대모양(배너) 광고
소셜마케팅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광고
오픈마켓	▶ 옥션, G마켓, 티몬 등 매체를 활용한 광고
중개플랫폼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같이 소비자와 소상공인 연계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부동산 앱 제외)
기타	▶ 온라인 판매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로고, 콘텐츠(영상, 앱, 제품 상세페이지 등) 제작

○ (유의사항)

- 실제 온라인상 홍보마케팅을 수행한 것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지출 증빙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간이영수증 불가)
- 네이버 비즈머니의 경우 충전 금액이 아닌 집행 금액 기준
-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경우 지원 불가
- 매출 관련 수수료(판매 수수료, 배달비 등) 및 부가가치세 본인 부담
- 선정 통보 후 온라인마케팅 수행 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선정 통보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지원금 지급 불가

3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2024. 10. 30.(수) ~ 11. 0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cbsb3@naver.com)
- (문의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2)
- (신청자격) 충북 도내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북 도내인 자**
 -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제외 대상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 2022년 ~ 2023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중 온라인 마케팅 항목 수혜자 * 수혜 업체의 이중 상품은 참여 가능
지원제외 업종	▶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 ^[붙임] 을 영위하는 사업자
그 외	▶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온라인 홍보 · 마케팅 진행 건 ▶ 대기업 및 그 출자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사업참여	필수	▶ 참여신청서	- [서식1]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2]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확인 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023년(1년) 자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선택 (해당 시)	▶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백년가게 · 백년소공인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대표자 취약계층** 확인 서류	
지원금 신청	필수	▶ 지원금 지급신청서	- [서식3]
		▶ 온라인마케팅 결과보고서	- [서식4]
		▶ 확약서	- [서식5]
		▶ 만족도 조사	- 링크 문자 발송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지원금 신청일 이후 발급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유효기간 내 문서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개인 또는 법인

※지원금 신청서류는 선정 대상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

*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상 도내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2인 이상 가정
- 공고일 기준(2024. 10. 30.), 2005년 이후 출생 자녀

** 대표자 취약계층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4 심사·선정

- (평가방식) 사업담당자의 정량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 고득점순 선정
- (평가기준) 평가 기준표에 따른 정량평가 (100점 만점) *가산점 포함

구분	항목 (배점)	세부 심사평가 항목					
정량평가 (90점)	매출액 (30점)	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30	25	20	15	10	5
		※ 2023년 매출액 기준, 2023년 이후 창업자는 연 매출로 환산하여 평가 - 2023.7월 ~ 12월 매출액 5천만원 → 2023년 매출액 1억원					
	대표자 연령 (30점)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20대 미만
		30	25	20	15	10	5
		※ 공고일(2024.7.19.)기준, 만 나이 기준(네이버 나이 계산기 참고)					
사업기간 (30점)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30	25	20	15	10	5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최대가점 (10점)	- 다자녀 가정 (3점) - 주민등록등본상 도내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2인 이상 가정						
	- 백년가게 · 백년소공인 확인서 (3점)						
	- 대표자 취약계층(10점) ①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③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예비군 관리 : 모집 차수별 인원 외 추가 예비 대상자 선정(10명 내외) 후 사업 포기, 취소 등 추가 대상자 필요시 예비군 활용 예정

** 동점자 관리 : 동점자 발생 시 매출액이 저조한 자 - 고령자 - 사업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우선 순위 결정

- (선정통보) 선정결과(선정, 미선정, 예비선정) 사업 참여자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

- 제출된 신청서 및 공통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필수서류 일부 누락 시 지원 불가
- 신청서상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추후 중복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사업 참여 불가
- 사업내용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에 한함
- 신청 접수 및 선정 통보 후 예산소진 시 지원 대상 제외 가능

붙임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